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이 부여되고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되며,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 3개월분 임금, 5회 이상의 산정기준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기간을 정하고, 출국금지 해제요청 사유를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호 본문 중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수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한다.

제23조의4의 제목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을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및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를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43조의4제5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3조의3제1항”을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를 “체불자료 제공일 전(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직전 연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한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6.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43조의 4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를 정할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를 정할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상습채불사업주로 정해진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1까지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채불횟수 산정 등)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서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개인별 월평균보수(월평균보수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채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7(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3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23조의8(업무위탁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 등 관계 서류의 제출 안내
2.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23조의9(위탁기관의 보고) 법 제43조의5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기 위해 제출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2. 그 밖에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임금, 근로제공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임금·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2. 해당 사업장의 명칭·소재지·대표자·사업자등록정보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7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의3(협조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법 제10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요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관련 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0조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게 사용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
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료(체납자료를 포함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폐업·양도 신고자료, 건설공사 실적자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
료
 5.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기간 만료일에 관한
자료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험사업
자 및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회사에게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등
의 가입 내역에 관한 자료
 7.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
중 기업별 피보험자 수 등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 제59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

까지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의4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의4.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해제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

12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

제59조의2 본문 중 “제59조에 따라”를 “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 및 제59조에 따라”로,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4의6.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37조제3항-----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4. (생략)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제외 대상) -----		
단서에서 “채불사업주의 사망	단서에서 “채불사업주의 사망	-----		
·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	·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	-----		
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말한다.	말한다.	-----.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	1. -----		
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	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	-----		
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소	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소	-----		
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	-----		
지 않은 사업주(이하 “채불사	지 않은 사업주(이하 “채불사	-----		
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	-----		
선고를 받은 경우(채불사업주	선고를 받은 경우(채불사업주	-----		
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	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	-----		

다)

2. ~ 6. (생략)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신설>

3. 4.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및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43조의4제5항에서 -----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

2의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직전 연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한 체불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3. 4. (현행과 같음)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5. 체불자료 제공일 전(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를 말한다) -----

6.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상습채불사업주로 정해진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채불횟수 산정 등)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서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개인별 월평균보수(월평균보수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채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날부
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7(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3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각각 다음 각호의 공공기
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
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
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23조의8(업무위탁의 범위) 고용
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의5제1
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기 위
해 필요한 소명자료 등 관계
서류의 제출 안내

<신 설>

<신 설>

<신 설>

2.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딸
린 업무

제23조의9(위탁기관의 보고) 법
제43조의5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
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
야 한다.

1.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기 위
해 제출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2. 그 밖에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임금, 근
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주민등
록번호·주소, 임금·근로제
공기간 등 근로조건

2. 해당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대표자·사업자등록정보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요청)

<신 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 7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의3(협조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법 제10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요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관련 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사용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료(체납자료를 포함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u>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폐업·양도 신고자료, 건설공사 실적자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u> 5. <u>외교부장관에게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기간 만료일에 관한 자료</u> 6. <u>「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험사업자 및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회사에게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등의 가입 내역에 관한 자료</u> 7. <u>「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 중 기업별 피보험자 수 등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u>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2의2. (생 략)

3. ~ 12. (생 략)

<신 설>

13. ~ 17. (생 략)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2의2. 법 제43조의4에 따른 입
금등 체불자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
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의4.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
국금지 요청·해제 사유의 확
인에 관한 사항

2의5.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12. (현행과 같음)

12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

13. ~ 17.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
및 제59조에 따라-----

-----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

다. 1. ~ 4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 9. (생략)	--. 1. ~ 4의2. (현행과 같음) <u>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 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무</u> <u>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 청 등에 관한 사무</u> <u>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 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u> <u>4의6.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 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 무</u> 5. ~ 9.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29 (044) 202 - 7548